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529호 2020. 5. 15. (금)

【조 례】

- 정선군 조례 제2775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2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조 례

제262회 정선군의회(2020. 04. 27.) 및 제5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05. 14.)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5월 15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775호

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설이용료 요금표(제6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이 용 료	
주 차 장	이륜차 승용차 대형차	(당일)	(체류)
		500	1,000
		2,000	4,000
		4,000	8,000
야 영 장	노 지	연중	10,000
	데 크	비수기 주중	15,000
		비수기 주말, 성수기	20,000

※ 성수기: 7월 ~ 8월

※ 비수기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
☐ 제안이유

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관내 지정관광지 및 타 지자체 마을관리휴양지 이용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 이용료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○ 야영장 시설 이용료 상향(별표)

(단위 : 원)

시설명	구 분	이 용 료	
야영장	노 지	< 현 행 > 비수기 주중 8,000 비수기 주말, 성수기 10,000	< 개 정 > 연중 10,000
	데 크	< 현 행 > 비수기 주중 10,000 비수기 주말, 성수기 15,000	< 개 정 > 비수기 주중 15,000 비수기 주말, 성수기 20,000

※ 성수기: 7~8월 / 비수기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